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000042**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신청인 : **MYEONGU KANG**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대리인 : 변리사 김진희, 동 이경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역삼동 649-10 서림빌딩

피신청인: MYEONGU KANG,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0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led.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이텐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0. 7. 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7. 7.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0. 7. 7.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0. 7. 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0. 7. 9.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0. 7. 16.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2010. 7. 16.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0. 8. 5.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0. 8. 5.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답변서미제출통지를 2010. 8. 6.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10. 8. 9.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서정일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0. 8. 9. 서정일 조정위원은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0. 8. 10.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10. 8. 17.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10. 8. 17. 조정부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9개의 생산 네트워크를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60개의 해외 판매지사를 두고 있다. 신청인은 "삼성" 및 "SAMSUNG"을 가장 대표적인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 신청인의

명의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의 가전제품류, 휴대폰, LCD, 반도체 등은 세계 최고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 최초 40나노 D램 개발, LCD 모니터, LED TV의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그 서비스시장을 확대해왔으며 신청인의 매출액은 2009년에 138조9천억원에 달한다(갑제5호증 연차보고서 참조).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2009년 2월 17일, 등록인 명의(e-mail 주소 startelecom@naver.com)는 강명구로 등록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색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주)사이덴터티의 홈페이지의 검색결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SAMSUNG"은 신청인의 주요 표장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SAMSUNG"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LED 분야에 주목하여 국내업계 최초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채용한 컴퓨터모니터 및 LED TV를 개발하는 등 “LED"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사업진출을 모색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일반에게 널리 알

려져 있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을 악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고, 피신청인 명의의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09. 2. 17. 전후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자라 볼 수 없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led.net>에서 gTLD인 “.net”은 도메인이름의 구성상 기술적 표기부분으로 도메인이름과의 비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samsungled”는 “samsung”과 “led”가 결합한 것으로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어를 의미하는 보통 명칭으로 상호간의 유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별력이 없는 것인바, 주된 요

부인 “samsung”이라는 저명표장에 부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지저명한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인 “SAMSUNG”와 분쟁도메인이름과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일응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UDRP 제4조의 해석상 “사용”이란 반드시 도메인이름을 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그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

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 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들인 <samsungled.net>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정일
1인 조정부인

결정일: 2010년 9월 4일